

#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김동규의원이 발의하여 의회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1. 개정이유**

-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인상함으로써 의원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  
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을 적용  
하여 인상함.(제2조제3항 별표 1.)  
⇒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반영(월정수당 증액 20,664천원)

## **3. 검토 및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안산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2017년도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0%를  
적용하여 제2조제3항의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존  
지급금액인 월 275만 4천원에 월 82,000원이 인상된 금액을  
합산하여 월 283만 6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사항이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김동규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의 급증에 따라 안건 심의시간 지연 문제의 해소 및 위원회간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임위원회를 분리·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의 2(상임위원회의 설치)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 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문화복지 위원회를 복지문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위원 수를 의회운영위원회 8명, 행정자치위원회 5명, 기획경제위원회 5명, 복지문화위원회 5명, 도시환경위원회 5명으로 개정함
- 조례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변경사항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 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경제위원회
  - 가. 미래전략관,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산업지원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문화위원회
  -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검토 및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임.
- 안 제2조2 개정 내용은,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안산시의회가 지난 2008. 4. 11.일부터 8년간 4개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 시 소유 토지의 개발에 따른 신규 사업의 실시, 지방 세수의 증가 등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를 2개의 상임위원회로 분리·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균형적인 운영측면에서 적정한 사항이라 사료됨.

【위원회 수 : 4개 → 5개(1개 위원회 증)】

현 행		변 경		증 감	비 고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회명	위원수		
의회운영	7	의회운영	7		
기획행정	7	행정자치	5	△2	명칭변경
문화복지	7	복지문화	5	△2	명칭변경
도시환경	6	도시환경	5	△1	
-	-	기획경제	5	5	신 규

- 단, 상임위원회 추가설치 시에 인력, 공간, 예산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1) 인력(공무원) 운용의 측면에서는,

1개 상임위가 증가할 시 필요 인력은 총 5명으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1명, 사무직원 7급 1명, 의사계 서기 7급 1명, 속기사 9급 1명, 부속실 무기계약직 1명이 필요함.

그러나,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전문위원 수를 5명(5급 3명, 6급 2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는 불가하므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2명 중 1명(5급)을 신규 위원회에 배치하고 사무직원 1명을 대체 확보하여야 할 것임

【전문위원실 인원배치】

위원회명	현 행			변 경			비 고		
	인원수	5급	6급	7급	인원수	5급	6급	7급	
의회운영		1	1		의회운영		1	1	
기획행정	1		1		행정자치	1		1	
문화복지	1	1			복지문화		1	1	
도시환경	1		1		도시환경	1		1	
-	-				기획경제	1		1	

\* 공무원정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총무과)와 별도 협의

2) 사무실 공간활용의 측면에서는,

1개 상임위가 증가할 시, 상임위원장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부속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의회 청사내 미활용 공간, 서고, 대회의실 및 의원휴게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3) 예산확보의 측면에서는,

신규 상임위 사무실 공간구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6천 만원으로 시설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3조의 개정 내용은, 상임위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로 분리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을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구청 행정지원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로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을 “미래전략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구청 세무1과, 구청 세무2과, 산업지원본부”로 변경하고,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이었던 산업지원본부를 일자리 창출과 노동정책을 다루는 기획경제국과의 업무 연계를 위해 기획경제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여 분장한 것은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사항이라 사료됨.

⇒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은 변경 없음.

【위원회 소관 직무】

현 행		변 경		비 고
위원회명	소 관	위원회명	소 관	
기획행정 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사무국	변경사항 없음
	공보관		공보관	
	감사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	
	구청 행정지원과		구청 행정지원과	
	구청 민원봉사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위원회 분리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	위원회 분리
문화복지 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분리
	구청 세무1과		구청 세무1과	위원회 분리
	구청 세무2과		구청 세무2과	위원회 분리
			산업지원본부	소관변경 (문복⇒기획)
도시환경 위원회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구청 주민복지과		구청 주민복지과	
	구청 환경위생과		구청 환경위생과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변경 (문복⇒기획)
	산업지원본부			